
Policy and Law Report _Vol.16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5.~12.11.) -

December 13,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 | 내용 | 일시 |
|-----------|---|----|
| 행정 안전부 | <p>•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 정부 조직 · 인력 효율화 및 국정과제 · 정책현안 추진 지원 -</p> <p>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고,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하기로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 · 재편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 주요 부처 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재부)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 등 : 12. 6. 시행 <small>* 장기전략국 ⇒ 미래전략국 /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회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심의회</small> ② (교육부)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 중심으로 전면개편 <small>*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 ⇒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small> ③ (행안부) 지방시대 실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생활기반 조성 · 지원 기능 강화 및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small>* 지역발전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지역혁신정책관 ⇒ 지역기반정책관 * 재난안전데이터과 상계 신설</small> ④ (농식품부)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 <small>*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 ⇒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상계 신설</small> ⑤ (산업부)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 및 에너지자원 · 원전수출기능 강화 <small>*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 존속기한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한시조직) 폐지 ⇒ 원전전략기획관 신설(한시조직)</small> ⑥ (국토부) 미래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 <small>* 자동차정책관 ⇒ 모빌리티자동차국</small> ⑦ (중기부) 특구, R&D, 소상공인 등 국정과제 · 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 <small>*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특구혁신기획단(←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이관)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지역)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기술혁신, 지역)</small> </div> |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p>②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활용정원은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 지원 - 통합활용정원 운영은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되며, ‘유능한 정부 구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p>③ 통합활용정원,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인력으로 재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수시직제 인력보강은 국정과제 등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비상경제 등 정책현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미래 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에 적극 재배치 함 <p style="text-align: center;">< 분야별 증원인력 현황 ></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 인력, 마약사범 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 오염수 대응 등 • (경제활력) 관광산업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진해신항 개발 등 • (미래대비) 모빌리티 추진,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 (글로벌 중추국가)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 국가유공자 심사인력 등 • (지방시대 등) 지방소멸 균형발전, 청년마을 확산 등 </div> |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
|---|---|----|--------------------------|----|---|----|
| < 참고_연합뉴스 발췌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h2 style="margin: 0;">주요 정부 부처 통합·재편 추진 내용</h2>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개편 및 이관 신설 폐지 </div> </div>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기존</th>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변경</th> </tr> </table> | | | | 기존 | → | 변경 |
| | 기존 | → | 변경 | | | |
| 기획재정부 |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 | → | 미래전략국 (지속가능경제과) | | | |
| | 재정혁신국 | → | 재정정책국 | | | |
| | 재정기획심의관 | → | 재정건전성심의관 | | | |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실 | → | 인재정책실 | | | |
| | 학교혁신정책실 | → | 책임교육정책실 | | | |
| | 교육안전정보국 | → | 디지털교육기획관 | | | |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정책관 | → | 균형발전지원관 | | | |
| | 지역혁신정책관 | → | 지역기반정책관 | | | |
| |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 → | 재난안전데이터과 | | | |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실 (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 | → | 식량정책실 (식량, 축산, 유통·소비) | | | |
| | (반려)동물 보호·복지 강화 | →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 | |
| | 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 | →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 | |
| | 차관보 폐지 | → | 농업혁신정책실 | | | |
| 산업통상자원부 | 소비부품장비협력관 | → | 산업공급망정책관 | | | |
|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 | 산업공급망정책과 | | | |
| | 신통상질서전략실 폐지 원전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 수행, 한시조직(2년)으로 설치 | → | 원전전략기획관 | | | |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관 | → | 모빌리티자동차국 | | | |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 | 특구혁신기획단 (변경 및 이관) | | | |
| | 기술혁신정책관 | → | 중소기업정책실(이동) | | | |
| 자료: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 | | | | |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 | | | |
|--|---|--|---|--|---|--|---|--|---|-------------------|
| | <p>• 소상공인 지원, 산업 진흥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p> <p>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 디지털 공유 간판 수량 규제 완화 ② (디지털 옥외광고)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등)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③ (교통수단 이용 광고) 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④ (지자체 설치·운영 광고) 지정계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허용 ⑤ (정당 현수막)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기간 규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참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시설물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 padding: 5px;"> <p>기존 전기 사용 광고는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거나,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시 제한</p> <p>개선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는 때에도 동영상 제한 등의 예외 인정</p>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d> </tr> </table> ② 간판 수량 산정 시 디지털 공유간판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 padding: 5px;"> <p>기존 업소당 간판 개수를 3개 이내로 제한</p> <p>개선 전통시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1개)은 간판 수량 제한의 예외 인정</p>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d> </tr> </table> ③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 전기 사용 광고 허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 padding: 5px;"> <p>기존 교통수단은 예외 없이 전기 사용 광고물 설치를 금지</p> <p>개선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은, 주차하여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 사용 광고 허용</p>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d> </tr> </table> ④ 공유자전거 상업광고 허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 padding: 5px;"> <p>기존 공유자전거는 광고 가능 교통수단에서 제외</p> <p>개선 공유자전거 대중화에 따른 광고 요청 증가를 반영, 상업광고 허용</p>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d> </tr> </table> | <p>기존 전기 사용 광고는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거나,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시 제한</p> <p>개선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는 때에도 동영상 제한 등의 예외 인정</p> |  | <p>기존 업소당 간판 개수를 3개 이내로 제한</p> <p>개선 전통시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1개)은 간판 수량 제한의 예외 인정</p> |  | <p>기존 교통수단은 예외 없이 전기 사용 광고물 설치를 금지</p> <p>개선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은, 주차하여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 사용 광고 허용</p> |  | <p>기존 공유자전거는 광고 가능 교통수단에서 제외</p> <p>개선 공유자전거 대중화에 따른 광고 요청 증가를 반영, 상업광고 허용</p> |  | <p>2022-12-06</p> |
| <p>기존 전기 사용 광고는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거나,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시 제한</p> <p>개선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는 때에도 동영상 제한 등의 예외 인정</p> |  | | | | | | | | | |
| <p>기존 업소당 간판 개수를 3개 이내로 제한</p> <p>개선 전통시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1개)은 간판 수량 제한의 예외 인정</p> |  | | | | | | | | | |
| <p>기존 교통수단은 예외 없이 전기 사용 광고물 설치를 금지</p> <p>개선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은, 주차하여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 사용 광고 허용</p> |  | | | | | | | | | |
| <p>기존 공유자전거는 광고 가능 교통수단에서 제외</p> <p>개선 공유자전거 대중화에 따른 광고 요청 증가를 반영, 상업광고 허용</p> |  | | | | | | | | |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p>㉔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p> <p>[기존] 항공기에는 본체 옆면 1/2 이내에서 자사 광고만 가능</p> <p>[개선] 광고 기술(래핑) 발전을 고려,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광고 허용</p>  <p>㉕ 현수막 지정 게시대 표시기간 자율화</p> <p>[기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시(15일 이내) 철거해야 함</p> <p>[개선] 자치단체장이 지정 게시대 현수막의 수요에 따라 2개월 이내에서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p>  <p>㉖ 자치단체 경계 안내 간판 제도화</p> <p>[기존] 자치단체 경계를 안내하는 간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p> <p>[개선] 경계 안내 간판을 공공목적 광고물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 부여</p>  <p>㉗ 정당 현수막 관련 위임사항(표시방법 및 기간) 구체화</p> <p>[법] 정당이 정당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 자유 설치</p> <p>[시행령]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작성하여 15일 이내로 게시하도록 함</p>  | |

| 부처 | 내용 | 일시 |
|----------------------------|--|-------------------|
|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 <p>•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발표</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함</p> <p>「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간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 활용, 신개념 바이오 연구·산업 육성 -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 혁신 - 새로운 기전과 접근방식의 신기술로 질병 대응 역량 강화 <p>②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 앞당김 - 가상화·모형화 기술로 바이오 연구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확률 높임 - 유효물질 발굴과 평가·검증을 최적화·고속화하는 토대 구축 <p>③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심지플랫폼을 구축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생산·축적·관리 체계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연구 활성화 <p>④ 디지털바이오 전환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바이오 우수연구개발성과 사업화 -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 확대 - 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 <p>2022-12-07</p> |

붙임 1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기본
방향



바이오-디지털 융합 촉진 + 공통기반기술·인프라 혁신

| 기술육성 | 기술수준 | 집중투자 |
|------------------------------------|---|---|
| 디지털바이오 5대 인프라 12대 핵심기술 확보 | '3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85% 기술격차 2.5년 | 디지털바이오 '23년 'R&D 4천억 지원 중장기 지속육성 |

추진
전략



| 부처 | 내용 | 일시 |
|----|----|----|
|----|----|----|

붙임 3 **디지털바이오 5대 기반 12대 핵심기술 육성방향**

| 구분 | 목 록 | 추진목표 |
|--|------------------|---|
| 5대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 포함 | 1.바이오조립생산(파운드리) | '28년, 바이오연구·제조 자동화 인프라 완비 및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 지원 |
| | 2.디엔에이 암호화 화합물은행 | '27년, 디엔에이 암호화 화합물은행 구축 완료, 델(DEL) 제작·활용 기술 확보 및 약물 선별검사(스크리닝) 서비스 제공 |
| | 3.휴먼 가상모형 | '22년, 간 질환 데이터베이스 완성, '27년 인체 장기 데이터베이스 완성 |
| | 4.바이오소재 플랫폼 | '26년, 바이오 14대 소재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 | 5.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 | '26년,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의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국제 데이터 저장소로 인정 |
| 12대 핵심 기술 | 1.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 '27년, 염기 수준의 유전자 교정 효율이 현 기술 대비 2배 이상 향상된 원천기술 확보 |
| | 2. 줄기세포 치료기술 | '27년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 및 데이터베이스 완성, '30년 재건줄기세포 활용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
| | 3. 인공지능신약 플랫폼 | '26년, 인공지능 모형 활용 신약 후보물질 4개 이상 발굴 및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
| | 4. 인공 유사장기 | '28년 인체유사도 90% 이상 확보 및 동물실험 대체 수준 약물평가 시스템 마련 |
| | 5. 첨단뇌과학 | '32년, 뇌 질환 극복 및 뇌기능 활용 분야에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선도 융합기술 20건 확보 |
| | 6. 전자약 | '26년, 전자약 시제품 확보 및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 마련 |
| | 7. 디지털치료제 | '24년, 국내 최초로 식약처 사용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제 사례 창출 및 확산 |
| | 8. 바이오닉스 | '30년, 바이오칩, 인공장기 등 바이오닉스 제품 인체적용 사례 창출 |
| | 9. 디지털그린 공장 | '30년, 광합성 효율 50%이상 향상 원천기술 확보 및 광합성 효율 개선 식물체 제작/분석·검증 |
| | 10. 마이크로바이옴 | '27년, 만성 난치질환용 '생균제제' 개발, 난치성 면역질환·암 치료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발굴 및 기전 규명/효능검증 등 신개념 치료 원천기술 확보 |
| | 11. 첨단 신약 | '30년 알엔에이, 펩타이드, 단백질분해, 시에이알(CAR) 등 기작별 원천기술 및 후보물질 확보 |
| | 12. 병원체 극복기술 | '25년 주요 백신 플랫폼 기술(mRNA, 재조합단백질 등) 자급화, '32년 치료제 신규타겟/기술 확보 및 후보물질 발굴 |

| 부처 | 내용 | 일시 |
|-------------|---|------------|
| 산업통상 자원부 | <p>• 법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p> <p>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함</p> <p>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보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 정책과제로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음</p> <p>주요 규제개선 과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일원화 ②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③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하여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④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증부담 완화 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 ⑥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시 개정 ⑦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 포함 ⑧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⑨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 제고 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외국인 투자 기업)와 부지 또는 시 | 2022-12-08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p>•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73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연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진흥·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 26조 신설)</p> | 2022-12-06 |
|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p>•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준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정비의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착수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두는 사전검토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사전검토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수 확대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p> | 2022-12-06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임시허가와 규제특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외에 사전 조정,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업무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 수를 "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제42조의7제1항·제2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연장 신청서에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③ 법령정비의 요청 및 처리 절차 (제42조의7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특례 사항에 관련된 법령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편의 정도,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검토 결과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④ 임시허가 신청 절차 (제42조의7제9항·제10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임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나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까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미종료 간주 기간 (제42조의7제11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정비가 필요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법령정비 요청일부터 임시허가 처리 결과를 통보받는 날까지로 정하는 등 법령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규제특례사업자가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영업정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별표 7의4 신설)</p> | 2022-12-06 |
| | <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영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6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편적 의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보편적 의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영무로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말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보편적 의무의 확대 (제2조제2항제1호라목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의무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의 산정 대상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추가함 | 2022-12-09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p>②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37조의5, 제37조의6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유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그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가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정보 수집 등의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이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1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제60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또는 관계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알게 된 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함 <p>② 속이는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조치에 관한 이용약관 마련 (제60조의10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이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조치 등의 사유·내용 및 해당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p>③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60조의11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p> | <p>2022-12-09</p>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찰청장, 검찰총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한 경우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 |
| | <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그 신고수리의 기준을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13조의5 신설)</p> | 2022-12-09 |
| 산업통상자원부 | <p>•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대외 무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888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1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제57조의2의 제목,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제66조, 제91조제6항에 제1호의3 신설 등)</p> | 2022-12-09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5. 시행)</p> <p>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종실습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요건으로서 조종실습 강사의 건설기계 조종경력 기간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71조제1항제4호, 제72조 단서, 제81조제2항제2호, 제82조제3항제2호, 별표 3 등)</p> | 2022-12-05 |
| 국토교통부 | <p>•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재심의 요청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9조의8 및 제9조의9 신설, 제13조의2 신설 등)</p> | 2022-12-09 |
| 식품의약품안전처 | <p>•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적합판정을 하고 적합판정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공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질문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기간과 조사 담당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처분 내용,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과 처분 대상자의 명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 2022-12-09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p>위해(危害)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4조의2 신설, 제34조의7 신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신설 등)</p> <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11. 시행)</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96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종합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신청 방법, 인정서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 신설, 제9조, 별표 12 제6호가목7) 등)</p> | 2022-12-09 |
| 금융위원회 | <p>•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8. 시행)</p> <p>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를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p> <p>‘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불공정영업행위의 범위에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된 구속성 계약체결의 유형을 추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 (제2조제11항 신설)</p> | 2022-12-08 |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 <p>-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범위보다 넓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그 범위를 같은 법에 맞춰 조정함</p> <p>②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제11조제1항제1호 다목 신설)</p> <p>- 변액보험 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등으로 손실가능성이 큰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외화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p> <p>* 적합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함</p> <p>** 적정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함</p> <p>③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추가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p> <p>-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 연대보증요구행위가 금지되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출’ 외에 ‘대출을 제외한 대출성 상품’도 포함되도록 금지대상 금융상품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시함</p> <p>-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된 구속성 계약체결의 유형에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p> <p>④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 (제16조제1항제1호)</p> <p>-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계약체결 권유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계약체결 권유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방문판매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도모함</p> | |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 <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클라우드컴퓨팅법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개정 (안 제8조의2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규정함 ②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안 (안 제1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③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 (안 제1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④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 (안 제15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⑤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 (안 제15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⑥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 (안 제15조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⑦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 (안 제15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⑧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3항제5호부터 7호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⑨ 이용지원시스템의 업무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0조제4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 <p>2022-12-06</p>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p>※ 의견 제시기간 : 12/6(화)~12/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p> <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안 제정안」</p> <p>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2.1.11. 공포, 2023.1.12. 시행)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② 보안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③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④ 보안인증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별표 제1호) <p>※ 의견 제시기간 : 12/6(화)~12/30(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p> | 2022-12-06 |
| 공정거래위원회 |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친족 범위에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켰음</p> <p>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부합하도록 위 규정을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수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하고, | 2022-12-09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p>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p> <p>※ 의견 제시기간 : 12/9(금)~12/1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로 제출</p> | |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일자 |
|-------|--|------------|
| 정무위원회 |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p> <p>한편,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p> <p>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없거나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가 37.9%로 나타나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이후 48.8%는 협의를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집계됨(2022. 5. 기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p> <p>또한,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특약의 무효화를 위하여서는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특약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에 납품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주요 원자재 품목 및 가격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② 부당한 특약 금지사항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하고, 하도급 계약 중 부당한 특약 사항을 무효로 하며,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신설) ③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 (안 제16조의3 신설) | 2022-12-0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 되는 상황임</p> <p>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대리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안 제14조의2)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함 (안 제24조) ③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대상으로하고,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안 제32조 및 제35조제1항)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간섭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경영간섭행위를 하도록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 2022-12-05 |
| | <p>•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p> <p>최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p> <p>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p> | 2022-12-07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p> <p>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3건으로, 이들 증권사가 받거나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9억6336만원임</p> <p>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 3150만원에 그침. 23건 중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 수령·제공액이 많은 경우는 47.8%인 11건이었음. 부당이익이 1억원 이상인 5건 중에선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이 적은 경우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에서는 부당 이익이 과태료의 2.4~63배에 달했음</p> <p>이처럼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해 제재 금액이 적은 것은 과태료 상한 규정 때문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음</p> <p>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6의2호 신설, 안 제449조)</p> | 2022-12-08 |
| | <p>• 「여성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4인)」</p> <p>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p> <p>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실제 협상력이 떨어져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영세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 등)</p> | 2022-12-08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기재 위원회 | <p>• 「<u>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u>」</p> <p>현행법은 궤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방식은 담배의 수량이나 니코틴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p> <p>그런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량은 같을지라도 그 니코틴 농도는 현저히 다르게 주입할 수 있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종류 및 기기의 흡입방식에 따라 니코틴의 소모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니코틴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할 때 책정되는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별표)</p> | 2022-12-02 |
|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p>•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의원 등 10인)</u>」</p> <p>「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은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범죄 피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긴급하게 신고하였으나 이른바 “알뜰폰” 가입자였던 해당 신고자의 위치가 즉시 파악되지 않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경찰관서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즉시 대응할 인력이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임</p> <p>이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p> | 2022-12-02 |
| | <p>• 「<u>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의원 등 10인)</u>」</p> <p>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p> | 2022-12-0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일자 |
|-----|--|------------|
| | <p>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의4제1항제5호 신설)</p> | |
| | <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p> | 2022-12-02 |
| | <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3인)」</p> <p>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p> | 2022-12-0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p>•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2인)」</p> <p>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경제·사회 전 분야의 획기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p> <p>이처럼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활용하며 혁신을 확산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p> <p>한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에 따른 추론 과정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편향성,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p> <p>따라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갖추어야 할 신뢰성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제공자 또는 이용자 등이 실천해야 할 윤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p> <p>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인공지능 법률 제정을 추진 중임</p> <p>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기본법이 부재하고 정책의 내용과 주체가 산업별, 지역별로 분절되어 체계적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p> <p>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 추세를 고려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2022-12-07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일자 |
|-----|---|------|
| | <p>③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p> <p>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 (안 제10조)</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p> <p>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p> <p>⑧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함 (안 제24조)</p> <p>⑨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 (안 제26조)</p> <p>⑩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안 제27조)</p> |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일자 |
|---------------|--|------------|
| 행정안전위원회 | <p>•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p> <p>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용액 당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1))</p> | 2022-12-02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p> <p>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p> <p>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p> | 2022-12-0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p>•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p> <p>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p> <p>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 (안 제63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 정의하고,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직원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비중 등을 명시함 - 아울러,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022-12-02 |
| | <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 의원 등 14인)」</p> <p>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선언한 삼성·현대·SK·LG·구글·애플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은 자신에게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p> | 2022-12-06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일자 |
|---------|--|------------|
| | <p>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p> | |
| 보건복지위원회 | <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p> <p>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p> <p>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음</p> <p>따라서,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p> | 2022-12-02 |
| | <p>•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p> <p>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p> <p>또한,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등)</p> | 2022-12-05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환경노동 위원회 | <p>•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p> <p>그러나 등록된 기술인력 이외의 사람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평가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p> <p>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를 하게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제7호 신설)</p> <p>또한,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p> <p>따라서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안 제65조제1항)</p> | 2022-12-05 |
| | <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0인)」</p> <p>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p> <p>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제3차 계획기간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등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p> | 2022-12-06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p>그 밖에 현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지침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 관리업체에서 전 업체로 확대함 (안 제8조제1항) ②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할당·할당취소 등 근거 조문 신설함 (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③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참여자별 배출권 보유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④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안 제22조) ⑤ 배출권 위탁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함 (안 제22조의3) ⑥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량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지정 결격 사유 등 권리·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⑦ 검증심사원의 등록·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4조의4) | |
| | <p>• 「<u>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 원 등 13인)</u>」</p> <p>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질·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재질·구조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자료의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p> <p>이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 평가서의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등)</p> | <p>2022-12-07</p>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危害)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殺生物)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8년도에 제정되었음</p> <p>이와 함께 제정 당시 기존의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제조·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까지 계속하여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p> <p>그러나 이러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서 ‘제조·수입’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조·수입의 유예기간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미승인 제품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제품의 시장 퇴출을 준비토록 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p> | 2022-12-08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 기관 | 주요 일정 | | 비고 |
|-------|-------------|--|----|
| 상임위 | 아래 【별첨1】 참조 | | |
| 국회도서관 | 12/5(월) | 「팩트북」 제99호 발간 - 기술 패권 | |
| 입법조사처 | 12/12(월) | 「NARS 입법·정책」 발간 -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 |
| | 12/12(월) | 「NARS 입법·정책」 발간 -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 |

【별첨1】 제401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 위원회 | 일시 | 구분 | 내용 |
|-----|----------------|------------------|---------|
| 정무위 | 12/13(화) 14:00 | 법안1소위 | - 법안 심사 |
| 과방위 | 12/15(목) 10:00 |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 법안 심사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12/12(월) 10:00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김홍걸·박대출 의원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등 | 의원회관 5간담회실 |
| 12/12(월) 10:00 | 재외동포들이 바란다 -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 | 설훈·이원욱· 김홍걸 의원실 | 의원회관 9간담회실 |
| 12/12(월) 10:00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 | 임오경 의원실 | 국회도서관 강당 |
| 12/12(월) 14:00 |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 이인영 의원실, (사)한국OTT포럼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12/13(화) 07:30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 -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23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 이원욱·김석기 의원실,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등 | 여의도 글래드호텔 |
| 12/13(화) 10:00 |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김성환·이소영 의원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의원회관 9간담회실 |
| 12/13(화) 14:00 | 기술패권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 | 조명희·변재일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 의원회관 3세미나실 |
| 12/13(화) 14:00 |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 방안 | 구자근 의원실 | 의원회관 소회의실 |
| 12/13(화) 14:00 |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조달청 관공선 낙찰제도 개선 - 한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영속 산업 추진방안 | 이달곤·윤한홍·최형두· 서일준 의원실 | 의원회관 2간담회실 |
| 12/14(수) 10:00 |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의 정책 수립 방안 모색 | 윤창현 의원실, 한국유통학회 등 | 의원회관 3세미나실 |
| 12/15(목) 10:00 |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 이상헌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 의원회관 2세미나실 |
| 12/15(목) 14:00 |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 방향 | 우원식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 의원회관 5간담회실 |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12/15(목) 14:00 |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정책연구포럼」 -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 개발과 산업화 전략 | 박형수 의원실 | 의원회관 2소회의실 |
| 12/16(금) 14:00 |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 | 정우택 의원실, 한국정책개발학회 | 의원회관 2간담회실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 기관 | 주요 일정 | | 비고 |
|-------|---------|--|----|
| 국회도서관 | 12/5(월) | 「팩트북」 제98호 발간 - 식량안보 | |
| | 12/6(수)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1호 발간 -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 | |
| | 12/8(목) | 「현안, 외국에선?’ 제49호 발간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 | |
| 예산정책처 | 12/6(화) | [NABO Focus 제54호]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 |
| | 12/7(수) |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
| 입법조사처 | 12/8(목) | 「NARS 입법·정책」 발간 -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 |

<국회의원실>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12/5(월) 10:00 | <u>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u> | 최형두·김희재·이정문· 홍석준 의원실 | 의원회관 2소회의실 |
| 12/5(월) 14:00 | <u>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u> | 윤주경 의원실 | 의원회관 2세미나실 |
| 12/5(월) 14:00 |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u>[다운로드] 파일1, 파일2</u> | 구자근·이 용 의원실 | 의원회관 2소회의실 |
| 12/6(화) 07:30 | <u>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u>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 양이원영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 의원회관 9간담회실 |
| 12/6(화) 13:30 | <u>핵심광물 공급망 안전전략 포럼</u> | 양금희 의원실 | 의원회관 8간담회실 |
| 12/7(수) 10:00 | <u>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u> - 수서발 新중앙선 원주 연결, 지방화 시대를 열자 | 엄태영,·이종배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등 | 의원회관 1소회의실 |
| 12/7(수) 10:00 | <u>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u> | 서병수 의원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국회도서관 강당 |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